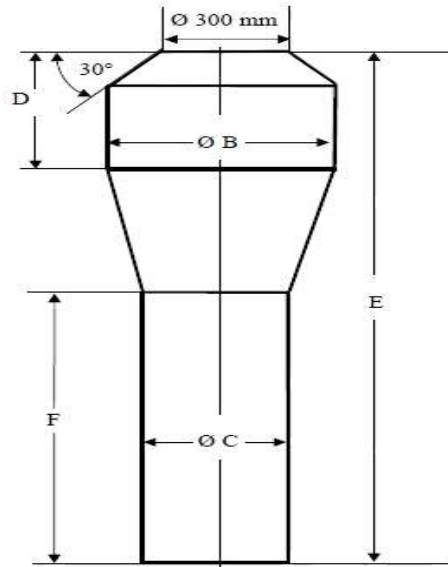


통로 측정장치(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)



승합자동차 유형		B (mm)	C (mm)	D (mm)	E (mm)	F (mm)
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		550	350	500 ¹	1,900 ¹	900
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3인승 이하 좌석전용 승합자동차		450	300	300	1,500	900
좌석 승객의 수보다 입석 승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		550	450 ²	500 ¹	1,900 ¹	900
입석 승객의 수보다 좌석 승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		550	350	500 ¹	1,900 ¹	900
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좌석전용 승합자동차		450	300 ³	500 ¹	1,900 ^{1,4}	900 ⁴
좌석 승객의 수보다 입석 승객의 수가 많은 2층대형승합자동차	1층	550	450 ²	500	1,800 ⁵	1,020 ⁵
	2층	550	450 ²	500	1,680	900
입석 승객의 수보다 좌석 승객의 수가 많은 2층대형승합자동차	1층	550	350	500	1,800 ⁵	1,020 ¹
	2층	550	350	500	1,680	900
좌석 전용 2층대형승합자동차	1층	450	300 ³	500	1,800 ⁵	1,020 ⁵
	2층	450	300 ³	500	1,680	900

주) 1. 상단 실린더 높이와 전체 높이는 다음 각 목의 뒷면을 향한 통로 부분에서 100mm를 줄일 수 있다.

가. 뒤 차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1.5m에 위치한 횡단면(후륜 차축이 2개 이상일

경우 가장 앞쪽의 후륜 차축)

- 나. 승강구 뒤쪽 끝단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(승강구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뒤쪽 승강구의 뒷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)
- 2. 하단 실린더의 직경은 다음 각 목과 같은 두 면의 가장 앞쪽 뒷면을 향한 통로 부분에서 400mm로 적용할 수 있다.(굴절버스의 경우 전·후방 차실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 적용한다.)
 - 가. 뒤 차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1.5m에 위치한 횡단면(후륜 차축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앞쪽의 후륜 차축)
 - 나. 차축 사이에 있는 가장 뒤쪽 승강구의 뒷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
- 3. 측면 이동형 좌석의 경우 220mm
- 4. 승객 승차공간의 일부가 운전자 승차공간과 겹치는 자동차의 경우 전방 차축 횡단 수직면 앞쪽 통로의 부분은 실린더 하단 부분 높이를 줄임으로서 1680mm로 전체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.
- 5.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단 부분 높이를 줄임으로서 전체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.
 - 가. 뒤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전방을 향해 1500mm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의 뒷면까지 아래층의 통로 부분을 1680mm로 적용한다.(후차축이 2개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가장 앞쪽의 후차축)
 - 나. 전축 중심선으로부터 전·후방으로 800m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횡단 수직면 사이에 위치한 통로 부분(전축 전방에 승강구가 있는 경우)을 1770mm로 적용한다.
- 6. 접이식좌석이 설치된 자동차의 통로의 경우에는 접이식 좌석을 접은 상태에서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되어야 한다.